

의안 번호	1938	<p>【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</p>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심 사 보 고 서</h1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2. 3. 25.(금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3. 25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4. 7.(목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건축과장 서용관)

### 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 개정사항과 옥외광고업자 책임 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심의처리기간 등 민원처리 관련 업무규정을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신설  
(안 제13조의2항 및 제6항)
- 위원회 심의와 심의를 거치지 않는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사항 개정  
(안 제26조제3항)
- 광고물(전단) 신고 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하는 사항 서식 신설  
(안 별지 제14호서식)
-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
(안 별표 6)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10조의4, 제17조,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, 제55조
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

### **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하성천)**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및 심의 필요여부와 옥외광고업자 책임 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민원처리 관련 업무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임.
  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# **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 근거법규

##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1. 6. 10.] [법률 제17379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10조의4(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)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·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,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6. 9.]

제17조(수수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에는 시·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)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6. 1. 6.>

1.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
2.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
3.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
4.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

[전문개정 2011. 3. 29.]

제2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 1. 6., 2020. 6. 9.>

1.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·현수막·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

1의2.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·표시한 자

1의3.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

2.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
3. 삭제 <2016. 1. 6.>
4. 삭제 <2016. 1. 6.>
5.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

거짓으로 표시한 자

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다.

[전문개정 2011. 3. 29.]

##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[시행 2022. 3. 8.] [대통령령 제32521호, 2022. 3. 8., 일부개정]

제43조의2(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)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

2.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

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·표시·설치하는 제3조 각 호(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)의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 한다.

③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.

1.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: 피해자 1명당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

2. 재산상 손해의 경우: 사고 1건당 3천만원

[본조신설 2021. 5. 4.]

제55조(과태료의 부과)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8. 12. 18., 2021. 12. 14.>

[전문개정 2011. 10. 10.]

[제46조에서 이동 <2011. 10. 10.>]

##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[시행 2021. 10. 21.] [대통령령 제32022호, 2021. 10. 5., 일부개정]

제21조(처리기간의 연장 등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

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.